

2021년도 한국도로공사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」 통합공고

도로교통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[이하 공사(公社)]는 2021년도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0. 12. 15

한국도로공사 사장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 : 고속도로의 기능 향상 및 서비스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, 도로교통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

사업별 지원내용

지원사업명	지원분야	지원내용	
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구매연계형)	지정과제 자유과제	기술개발 자금지원	과제당 최대2년, 6.5억원 이내
② 道公기술마켓 기술R&D			과제당 최대2년, 10억원 이내
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			과제당 최대1년, 5천만원 이내

(신청기간) 2020. 12. 15(화) ~ 2021. 1. 18(월) 13:00시 한 [34일간]

2. 지원분야

□ 지원분야

○ (지정과제) 공사(公社)에서 지정한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

연 번	지정과제명	비고
공 통	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구현을 위한 과제(디자인 포함)	
1	고속구간(110km/h 이상) 전이구간 SB3-B 등급 방호울타리 개발	
2	선진 안개소산시스템	
3	고속도로 포장 하부 비파괴 조사기술	
4	거더 높이 1.5m 이하인 강박스 교량 거더 내부 점검 장비(방식)	
5	고속도로 시설물 건설 재료 대체 기술* * 기존 시설물 건설 재료 외 기타재료로 대체하는 기술 ※ (예시)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아스팔트 포장공법, 배수관 및 암거 건설재료 대체 등	

* 지정과제별 세부내용(붙임 1)

○ (자유과제) 고속도로의 기능 향상 및 서비스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교통분야 기술개발 지원

* 지정과제(공통 포함 6개)도 자유과제로 응모 가능

3. 지원대상

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

* 대기업, 중견기업, 개인 제외

(기존) 법인사업자 → (개선) 법인사업자 + 개인사업자

※ 금번 공고부터 응모 가능

○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구매연계형) 과 ② 道公기술마켓 기술R&D의 경우 다음의 지원조건에 해당할 것

가.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

*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

나. 부채비율이 1,000% 미만 일 것

*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

다.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 하지 않을 것 (붙임2)

○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

□ 지원제외 사항

○ 기술개발이 불필요한 완성기술

○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

○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○ 공사(公社)를 포함한 타(他) 기관의 공모 및 설계(시공) 사례가 있는 경우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경우

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(제안)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
4. 사업별 지원조건

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구매연계형)

- (신청자격) 공고문의 '3. 지원대상' 만족
 - * 컨소시엄 가능(주관기관-참여기관-위탁연구기관)
[각 기관별 정의 : 붙임3참조]
- (지원분야)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
- 지원규모

지원규모	개발비 분담		
	정 부	공사(公社)	중소기업
과제당 최대2년, 6.5억원 이내 (연간 3.25억원 이내)	80% 이내	10% 이상	10%이상

- * 상기 내용은 최대 지원규모로서, 신청과제의 개발내용,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
공사(公社)의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신청한 개발비용보다 축소 될 수 있음
- * 지원규모 6.5억원 이내는 '정부 + 공사(公社)' 부담액
- *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
고시 제2020-38호)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

② 道公기술마켓 기술R&D

[본 사업은 공사의 과제선정심의를 통과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'구매
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공동투자형)' 으로 지원]

- (신청자격) 공고문의 '3. 지원대상' 만족
 - * 컨소시엄 가능(주관기관-참여기관-위탁연구기관)
[각 기관별 정의 : 붙임3참조]
- (지원분야)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

○ 지원규모

지원규모	개발비 분담		
	정 부	공사(公社)	중소기업
과제당 최대2년,10억원 이내 (연간 5억원 이내)	44% 이내	44% 이내 (정부와 1:1 대응)	12% 이상

- * 상기 내용은 최대 지원규모로서, 신청과제의 개발내용,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
공사(公社)의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신청한 개발비용보다 축소 될 수 있음
- * 지원규모 10억원 이내는 ‘정부 + 공사(公社)’ 부담액
- *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
고시 제2020-38호)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

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

- (신청자격) 공고문의 ‘3. 지원대상’ 만족
 - * 컨소시엄 가능(주관기관-참여기관-위탁연구기관)
 - [각 기관별 정의 : 붙임3참조]
- (지원분야)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
- (지원규모) 과제별 최대1년, 총 기술개발비의 50% 이내(단, 최대 5천만원 한도)

5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신청·접수기간 : 2020. 12. 15(화) ~ 2021. 1. 18(월) 13:00시 한 [34일간]
 - * 마감일까지 온라인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야 하며, 마감일 13시 이후 신청 불가
- 신청방법
 - (접 수 처)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(<https://market.ex.co.kr:5004/>)를 통한
온라인만 접수 가능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)

□ 평가방법

구 분		선정방법	주요 평가내용
공사(公社)	서류검토	적정/부적정 판정	제출서류의 적정성 등
	사전검토	적정/부적정 판정	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등
	과제선정심의	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선정	창의성도전성 및 제품화가능성 등
중기부	최종평가	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선정	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및 계획 실현 가능성 등

*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 : 공사(公社)의 사전검토 및 과제선정심의로 지원과제 확정(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대상 아님)

□ 지원과제 확정

- 공사(公社)의 과제선정심의 시,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구매연계형), ② 道公기술마켓 기술R&D,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 별 특성 및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지원사업으로 매칭 실시
 - * 과제 신청 시 희망 지원사업 선택(우선순위 명시)가능하나 과제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사업 ①, ②의 경우 공사(公社)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지원과제 확정 예정

7. 향후일정 및 문의

□ 향후일정

- (신청기간) 2020. 12. 15(화) ~ 2021. 1. 18(월) 13:00시 한 [34일간]
- 과제선정 일정(예정)

지원사업명	과제선정심의 (공사(公社))	최종평가 (중기부)
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구매연계형)	1월	3월
② 道公기술마켓 기술R&D		
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		-

* 공사(公社)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 및 확인

-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道公기술마켓 홈페이지(<https://market.ex.co.kr:5004/>) 확인
-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로공사 기술심사처 기술마켓팀으로 문의
- 연락처 : 054-811-3738(3737)

8. 기타 유의사항

- 연구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공사(公社)와 중소기업의 공동소유로 하되, 상호협의를 따라 별도 정함. 기술개발 관련하여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중기부 관리지침¹⁾ 및 공사(公社)의 운영요령²⁾ 등을 따른다.

1)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구매연계형) 및 ② 道公기술마켓 기술R&D :

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(붙임4),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(붙임5),
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(구매조건부) 관리지침(붙임6)

2)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 :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(붙임7)

- 사업개발비에 외부 전문가 활용 의무반영 및 필요시 시험시공 비용 반영
- 기술개발 완료 후 1년 이내 지식재산권* 의무 취득
 - * 정부 인증신기술,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등록에 한함
 - ※ 미취득시 향후 판로지원 중지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불가(개발완료 1년 이후 5년간)
 - ※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구매연계형)과 ② 道公기술마켓 기술R&D만 해당
- 공고문에 정한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과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공사(公社)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검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공사(公社)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술에 한해 과제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.

- 붙 임 :**
1. 지정과제 세부내용 1부.
 2. 신청 제한사항 1부.
 3. 제안서 양식 및 구비서류 목록 1부.
 4.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.
 5.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.
 6.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(구매조건부) 관리지침 1부.
 7.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.